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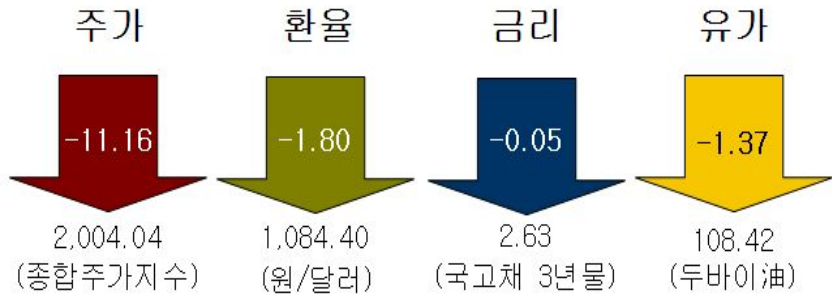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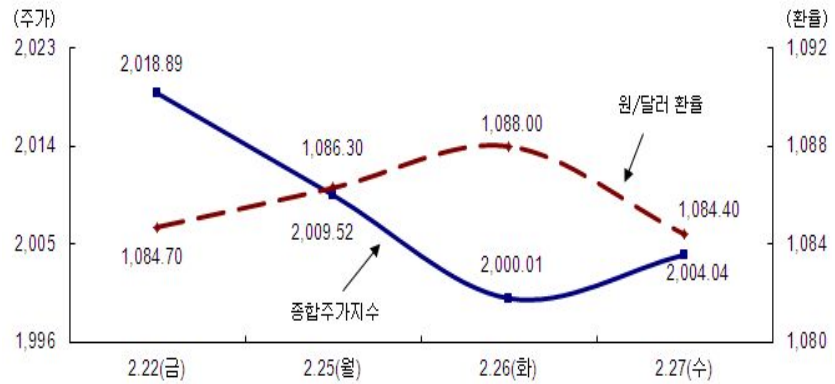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지하경제 해소 방안

·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22~2.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지하경제 해소 방안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 지하경제 해소 방안

#### -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

#### ■ 선진국보다 높은 지하경제 규모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직접추계방법, 간접추계방법, 모형추계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에서 간접추계방법 중 하나인 통화 수요 (currency demand)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정도로 추정된다.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13%, 개도국은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탈세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 ■ 높은 지하경제 규모의 배경

국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 자영업자의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5.9%로서 2000년 22.6% 대비 3.3%p 상승하여 OEC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부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지수는 2008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회 각 분야의 부패 및 불투명성은 불법 자금 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된다. 경기침체로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간접노동비용을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 유발도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진다.

## ■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①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AUSTRAC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관련 자료에 대한 자동보고(Auto Reporting from Bank)제도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도 허용

② **프랑스**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 (Indirect measures of income - presumption of income on the basis of lifestyle)하는 시스템을 도입

③ **캐나다**는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납세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누락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는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Research Audit Program)을 도입하여 불성실 납세의 원인을 파악. 또한, 주택개량업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

④ **미국**은 탈세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Programme)을 도입. 미 국세청(IRS)은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여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

## ■ 정책적 시사점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의 배경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을 살펴보면, ①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 ②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③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④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하고,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⑤ **노동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⑥ **교육을 통해 납세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세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탈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 1. 지하경제 정의 및 양성화 필요성

- (정의)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함
  - 지하경제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underground economy, shadow economy, hidden economy, black economy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됨
  - 지하경제는 금전거래와 비금전거래, 불법적, 합법적인 활동으로 구분되며 지하경제는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실체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하경제활동의 형태별 구분>

	금전거래		비금전거래	
불법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물의 거래</li> <li>· 마약 생산 및 거래</li> <li>· 매춘, 밀수, 사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장물, 밀수품 등의 현물거래</li> <li>·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약물의 생산 또는 약용 식품의 재배</li> <li>·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도</li> </ul>	
합법적 활동	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li> <li>· 합법적인 재화 및 용역과 관련된 업무 중 미신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임금 및 자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에 대한 할인 및 부가 혜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인 재화 및 용역의 현물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 생산</li> <li>· 이웃간의 도움</li> </ul>

자료 : Schneider, F. (2004).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ies of 145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irst results over the period 1999 to 2003." IZA. 1431

- (양성화 필요성)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복지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
  - 복지재원 확대를 위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국세청은 공정과세추진기획단(TF)을 최근 신설했으며 기획단은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수확대 분야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
  - 새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 공정과세를 함으로써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 지하경제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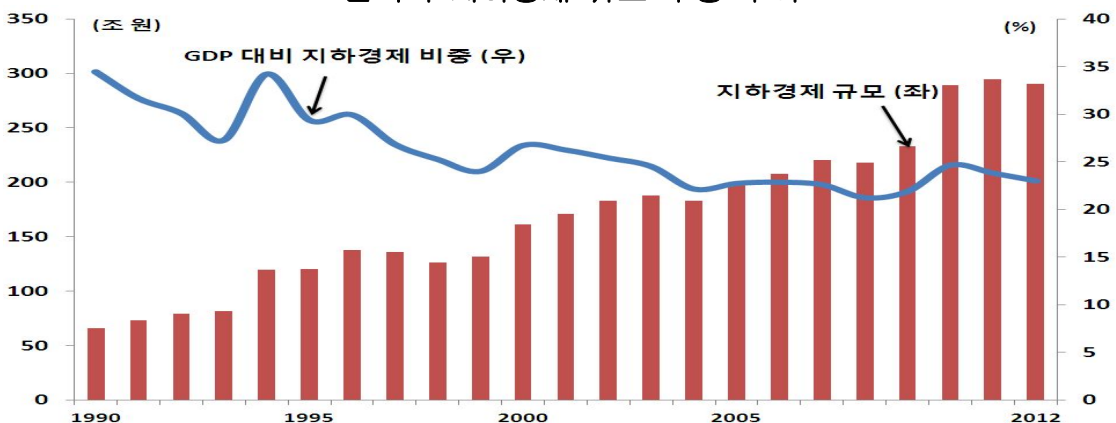
○ (추정 방법)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직접추계방법, 간접추계방법, 모형추계방법으로 구분되고, 규모는 추정방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 직접추계방법은 설문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추계 결과가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존하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조사 대상, 시기, 방법에 따라 추계 결과의 오차가 크게 존재함
- 간접추계방법은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과 지출의 괴리를 비교하여 추정하는 방식과 산업연관표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세금 탈루율을 추정하는 방식이 존재함
  - Tanzi(1982, 1983)이 제시한 방법으로 통화수요함수 추정방식도 존재
- 모형추계방법은 지하경제의 요인 변수와 지하경제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법
  - Schneider and Enste(2000)가 제시한 DYMIMIC(Dyna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Model)이 대표적인 방법임

○ (규모 추정1)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지하경제를 추정한 결과,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됨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내외로 추정됨<sup>2)</sup>
  - 지하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다 최근 소폭 상승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치 (자세한 추정 방법은 별첨에 첨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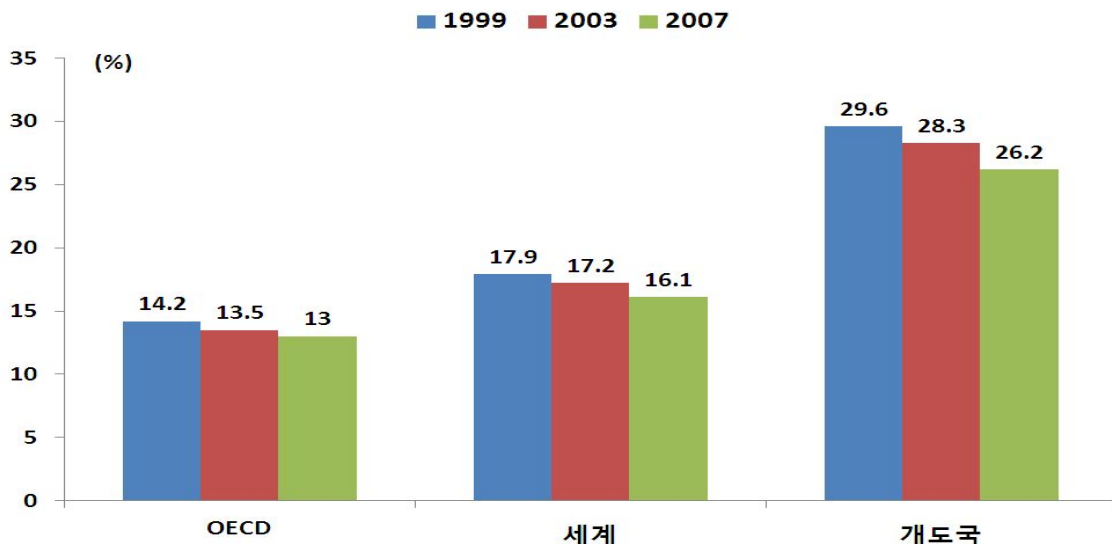
1) Faal, Ebrima.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Guyana." Vol.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Ariyo, Ademola, and William Bekoe.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Nigeria." Vol. 11(2). Journal of Monetary and Economic Integration 등을 참조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지하경제 규모와 문제(2005)」에 따르면, 2003년 지하경제 규모는 21%로 추정. 2010년 한국조세연구원은 2008년 기준 17~19%로 추정. Schneider, F., Buehn, A., & Montenegro, C. E. (2010)는 2006년 기준 29%로 추정.

○ (국별 지하경제 규모 추이)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개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의 2배 이상 수준임

-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냄
  - OECD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 GDP 대비 14.2%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13%로 1.2%p 하락
  - 세계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 GDP 대비 17.9%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16.1%로 1.8%p 하락
  - 개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 GDP 대비 29.6%를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26.2%로 3.4%p 하락
  
- 추정 결과, GDP 대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선진국(OECD)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

<국별 지하경제 규모 추이 변화>



자료 : Schneider, F., Buehn, A., & Montenegro, C. E. (2010).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World Bank.

주 : 각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MIMIC)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한 후, 지역별 지하경제 규모는 각 나라의 지하경제 추정치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GDP를 가중치로 두어 지역별 평균 수치를 구함

### 3. 높은 지하경제 규모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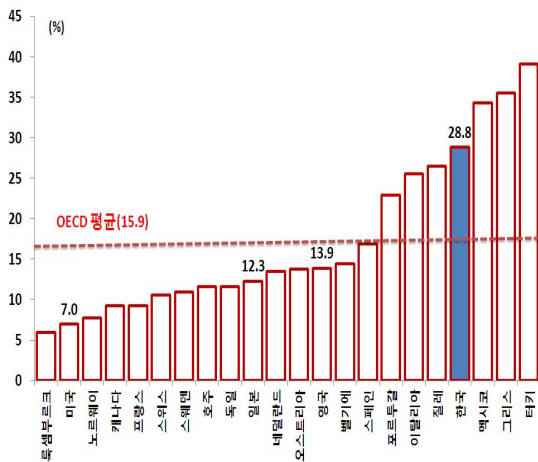
○ (높은 자영업 비율)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자영업자의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음<sup>3)</sup>

-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들어 이들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 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차례의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규모가 약 3조 6천억 원으로 소득탈루율이 4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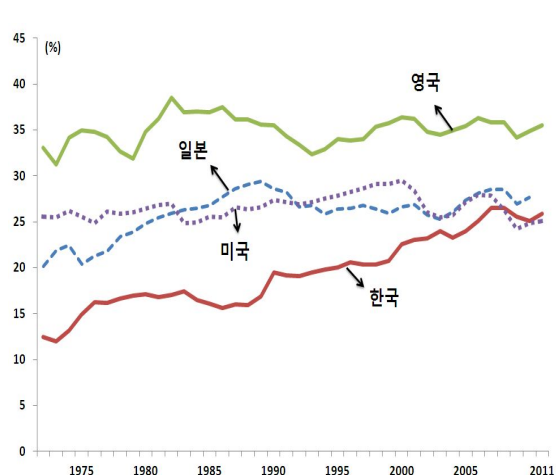
○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유발 요인 증가

- 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OECD 선진국인 일본, 미국, 영국과 비교해 보면 가장 빠르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급증하여 2011년 25.9%를 기록 2000년 22.6% 대비 3.3%p 상승하며 OEC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반면에, 영국의 국민부담률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2000년 36.4%에서 2011년 35.6%로 하락, 미국도 2000년 29.5%에서 2011년 25.1%로 하락
  - 일본은 2000년 26.6%에서 2010년 27.6%로 1%p 소폭 상승에 그침

<주요국의 자영업 비율>



<국민부담률 추이>



자료 : OECD

주 : 2010년 기준, 총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율

자료 : OECD

주 :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100

3)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박명호, 재정포럼, 2010년 3월,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중앙값 기준)은 2008년 기준 24.3%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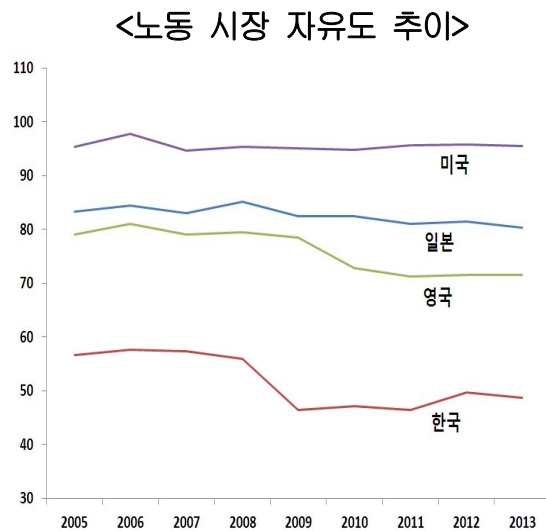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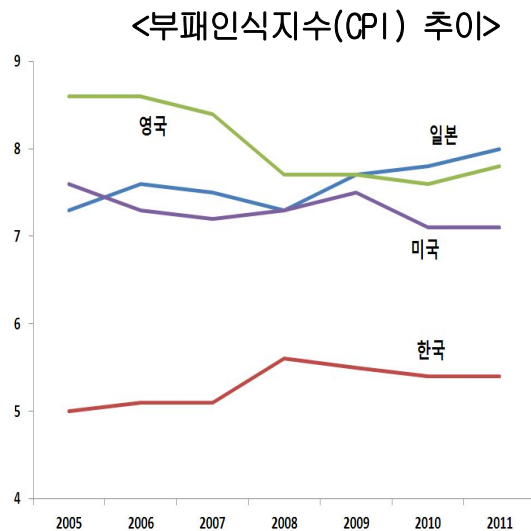


○ (부정·부패) 한국의 부패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지하경제의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한국 사회의 부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요 선진국인 일본, 영국, 미국에 비해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제도권 노동시장 및 노동시장 규제) 경기침체로 공식경제<sup>4)</sup>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시장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고용은 지하경제 형성을 촉진

- 경기침체로 인해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지하경제의 일자리로 편입되어 비제도적 노동시장이 확대되면 지하경제 형성에 영향을 미침<sup>5)</sup>
  - 또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탈세 통로가 될 수 있어 지하경제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함
  - 근로시간과 처우 관련 규제로 인해 노동비용을 축소하려는 동기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 지수는 미국, 일본, 영국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주 :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의미

자료 :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4) 정부의 공식 통계에 파악되는 ‘official economy’로 ‘지상경제’로도 표현되며 지하경제와 대비되는 개념  
 5) Eilat Y., & C. Zinnes,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friend or foe? A polic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30(7). 2002

## 4.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를 위한 정책

### ① 호주

#### ○ 현금거래 관리 감독 강화와 성실납세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 (현금거래 관리 감독 강화) 현금 거래가 많은 분야의 업종 및 매출 규모별로 원가, 인건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기준율(Benchmarking of tax return information by industry categories)을 산정하여 잠재적 현금 매출 누락자 선정
  - 납세자들은 스스로의 신고 성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업종 별 기준율을 벗어난 잠재적 불성실 사업자를 분석
  - 2011년, 107개 업종에 대한 기준율을 산정하여, 잠재적 현금매출 누락자 4만 6,000 명을 선정
-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원천징수 세율 차등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 건설 등 일부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하도급 업체의 납세 성실도에 따라 차등화를 실시함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호주 국세청은 호주 금융정보 분석센터 (AUSTRAC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이 가능함
  -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와 체결된 MOU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주요국 중 국세청과 금융정보 분석센터의 정보공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자동수집(Auto Reporting from Bank)제도는 호주 금융 기관들이 이자 지급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도 가능함
- (납세 교육 강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Cash Economy Communications Strategy)을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납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현금 거래 실적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의무감 제고

## ② 프랑스

-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를 통하여 탈세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추계에 의한 소득결정 등 강제적 시정 조치를 시행
  -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 의심거래자료를 관리하는 프랑스 금융정보기구(TRACFIN)내에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조세허브(Tax Hub)를 설치하여 탈세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
    - 금융기관, 보험회사, 환전업, 부동산업, 게임·도박업, 보석·귀금속 거래업, 미술품상, 골동품상, 회계사 등은 사업용 계좌에서 잦은 현금 인출 등 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자금이나 거래를 TRACFIN에 신고해야 함
    - TRACFIN는 국세청으로부터 의심거래 관련자의 납세정보를 제공받아 보고된 정보와 종합 분석하여 탈세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함
  - (소득 추계 시스템 강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 (Indirect measures of income-presumption of income on the basis of lifestyle)
    - 신고소득과 자산 및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를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거나 소득의 원천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세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고 세금을 징수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프랑스 국세청은 프랑스 금융정보기구 (TRACFIN)를 통한 금융거래 정보 접근이 세무조사 단계 뿐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자료 조회 가능
    - 현금, 주식, 채권 등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모든 종류의 계좌 개설과 해지, 변경 등에 관한 금융 정보를 프랑스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 데이터 베이스를 언제라도 이용 가능함
    - 국세청은 해외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를 통한 금융 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해외계좌로 이전된 자금이 과세소득이고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음

### ③ 캐나다

-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Research Audit Program) 등을 통해서 현금 수입업종 등 기존의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임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
  - (현금 수입 업종 관리 감독 강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과세 상세내역, 불성실납세 원인 등 상세 정보를 수집
    - 특히,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세원관리 전략을 세워나감
  -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캐나다의 주택개량업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
    - 주택개량 후 인적사항, 소재지, 납세번호 등 용역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
    - 미등록 사업이 많은 주택개량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 공식화 및 성실납세를 유도
  - (성실 납세 교육 강화) 캐나다의 현금결제 자제 유도를 위한 소비자 교육 (Atlantic Underground Economy Compliance Measurement Initiative )
    -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포스터, 안내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하경제의 위험성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현금거래가 많은 주택 건설이나 개량 서비스 업종에 대한 현금결제 자제를 유도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캐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분석센터 (FINTRAC ;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er) 및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정보 접근이 가능함
    - FINTRAC는 금융 자료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캐나다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금융기관은 1회 10,000 달러 이상 고액 거래 및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와 재산 등을 FINTRAC에 보고하고, 보고된 정보 중에 탈세혐의와 관련된 거래는 FINTRAC가 캐나다 국세청에 통보함

#### ④ 미국

-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Programme)을 통해 탈세 소득 등을 파악하고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
  -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새로운 결제 수단 및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 (Strengthened reporting requirements)
    -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 사업자는 가맹점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한 연간 지불액(매출)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2011년부터 의무화 하여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 가맹점이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하여 예비적 원천징수를 2012년부터 실시
  - (역외 금융계좌 보고 제도 강화) IRS는 역외 금융계좌 보유자 파악을 위해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여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 조사 시행을 통해 세금 추징
    - 2003년 미신고 세금만 납부하고 역외계좌신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와 관련된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는 역외계좌관련 미신고소득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을 시행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IRS는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sup>6)</sup>와 금융기관 및 납세자를 통해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함
    - 2010년 FinCEN와 IRS 사이에 체결될 MOU를 통해 FinCEN은 IRS 준법감시자(IRS compliance employees)에게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함
    - 금융자료 자동수집(Auto Reporting from Bank)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이 가능
    - 사업상 거래에서 \$10,000 이상의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IRS에 신고하는 고액현금수취거래 신고제도(Report of Cash Payment)가 의무화 되어 있어 납세자를 통한 현금거래 정보 접근 가능

6) 미국 재무성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 마약 등 범죄자금 세탁행위 등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 정보를 통보 받아 분석하는 기구임

## 5. 정책적 시사점

-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세원 확충과 성실 납부의 유인책 강화가 필요
  -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탈법 거래를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①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 강화
  -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
- ②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세 포탈 방지
- ③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
  -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를 예방
- ④ 유사상품 유통,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시키는 한편 부정·부패 방지책 마련
  -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척결하여 탈세를 방지
- ⑤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을 축소
  - 경기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을 마련
  -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등을 막아 비제도권 노동시장 형성을 억제

⑥ 교육을 통한 납세 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정규 교육과정에 세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성실납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조세 포탈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조세 포탈을 방지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mailto:kimmj@hri.co.kr))

<부록> 화폐 수요 (currency demand) 모델을 활용한 지하경제 추정 방법

-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규모를 추정한 다음 화폐유통 속도(velocity of money)를 이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 7)

$$\Delta \ln(C/M_2)_t = \beta_0 + \beta_1 \ln T_{t-1} + \beta_2 \ln \pi_{t-1} + \beta_3 \ln(C/M_2)_{t-1} + \beta_4 \Delta \ln GDPY_t + \beta_5 \Delta \ln EXP_t + \beta_6 \Delta \ln \pi_t + \epsilon_t$$

C : 현금통화, M<sub>2</sub> : 광의통화, T : 조세부담률, π : 소비자물가지수, GDPY : 일인당 GDP, EXP : 민간소비/GDP

· 위 식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불법적인 화폐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

① 위 식에서 추정치(fitted value)를 구하고 그 값과 추정된 계수를 대입하여 (C/M<sub>2</sub>)를 추정하고 T변수를 제거한 후 (C/M<sub>2</sub>)<sub>wt</sub>를 추정함

$$\text{즉, } \Delta \ln(\widehat{C/M_2})_t = \beta_0 + \beta_1 \ln T_{t-1} + \beta_2 \ln \pi_{t-1} + \beta_3 \ln(C/M_2)_{t-1} + \beta_4 \Delta \ln GDPY_t + \beta_5 \Delta \ln EXP_t + \beta_6 \Delta \ln \pi_t + \epsilon_t$$

$$\Delta \ln(\widehat{C/M_2})_t = \beta_0 + \beta_2 \ln \pi_{t-1} + \beta_3 \ln(C/M_2)_{t-1} + \beta_4 \Delta \ln GDPY_t + \beta_5 \Delta \ln EXP_t + \beta_6 \Delta \ln \pi_t + \epsilon_t$$

위의 첫 번째 식에서 추정된 (C/M<sub>2</sub>)와 두 번째 식에서 추정된 (C/M<sub>2</sub>)의 차이는 세금 회피 목적을 위한 현금통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임

② 위 추정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화폐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계산 : [(C/M<sub>2</sub>)-(C/M<sub>2</sub>)<sub>wt</sub>]\*M<sub>2</sub>

③ 공식적인 경제의 화폐유통속도(V)를 구한 후에, 지하경제 규모는 위에서 추정한 불법유통 화폐 규모와 화폐유통속도의 곱으로 추정

7) Faal, Ebrima.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Guyana." Vol.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Ariyo, Ademola, and William Bekoe.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Nigeria." Vol. 11(2). Journal of Monetary and Economic Integration



<참고 자료>

1. Faal, Ebrima.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Guyana." Vol.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2. Ariyo, Ademola, and William Bekoe.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Nigeria." Vol. 11(2). Journal of Monetary and Economic Integration
3. Tanzi, V.,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and implications.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Lexington Books. 1982.
4. Tanzi, V.,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Estimates, 1930-80'", in IMF Staff Papers, Vol. 30, No. 2. 1983
5. Eilat Y., & C. Zinnes,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friend or foe? A polic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30(7). 2002
6. Schneider, F.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ies of 145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irst results over the period 1999 to 2003." IZA. 1431. 2004
7. Schneider, F., Buehn, A., & Montenegro, C. E.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World Bank. 2010
8. Schneider, F. and Enste, D. "Shadow Economies: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8(1). 2000
9. 주OECD 대표부, 「주요국 과세당국의 지하경제 축소 노력 현황」, 2012. 10.
10. OECD, 「Reducing opportunities for tax non-compliance in the underground economy」 Forum on Tax Administration, 2012. 1.
11. 국세청,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2012 국세행정 포럼 자료, 2012. 6.
12. 박명호,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0. 3.
13. 안중석 외 6명,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1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1.9	6.0	-1.0	-3.8	-0.4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21일	2월 2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98	1.90	-0.08%p
	엔/달러	77.66	79.37	85.86	93.68	92.04	-1.64¥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286	1.3065	-0.0221\$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881	14,075	194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1,309	11,254	-5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68	2.63	-0.05%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86.2	1,084.4	-1.8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15.2	2,004.0	-11.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21일	2월 2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2.78	92.76	-0.02\$
	Dubai	104.89	92.89	107.99	109.79	108.42	-1.37\$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3.13	292.90	-0.2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